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864호(號) 1933(昭和 8)년 3월 29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12호(號)

1932(昭和 7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36호(號)(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旅客及荷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3(昭和 8)년 4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3(昭和 8)년 3월 29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93조(條) 중(中) 「1등침대차(一等寢臺車)」의 아래[下]에 「1·2등침대차(一·二等寢臺車)」를 추가(追加)함.

제104조(條) 침대(寢臺)의 설비(設備)가 있는 열차(列車) 및 그 등급(等級)은 아래[左]와 같이 함.

열차운전시간(列車運轉時間)	열차번호(列車番號)	등급(等級)	침대차연결구간(寢臺車連結區間)
1 부산(釜山)·봉천(奉天) 간(間)	1,2,3,4,5,6	1,2,3등(等)	전구간(全區間)
2 경성(京城)·단동(安東) 간(間)	101,102	2,3등(等)	전구간(全區間)
3 경성(京城)·상삼봉(上三峰) 간(間)	507,508	2,3등(等)	전구간(全區間)
4 경성(京城)·청진(淸津) 간(間)	503,504	2,3등(等)	2등(等) 전구간(全區間) 3등(等) 경성(京城)·함흥(咸興) 간(間)
5 경성(京城)·목포(木浦) 간(間)	301,302	2,3등(等)	전구간(全區間)

전항열차(前項列車) 외(外) 필요(必要)하다고 인정(認)한 경우에는 임시(臨時)로 침대차(寢臺車)를 연락(連絡)하여 침대권(寢臺券)의 발매(發賣)를 할 수 있음.

제139조(條) 단서(但書) 중(中) 「승차권(乘車券) 소지(所持)의 여객(旅客)인 경우」의 아래[下]에 「별단(別段)의 정(定)한 경우를 제(除)함」을 추가(追加)함.

제152조(條)제2호(號)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2 경과월수(經過月數)가 2개월(箇月)인 때는 당해(當該) 경과월수(經過月數)에 대하여 1개월(箇月)마다 계산(計算)한 정기승차권(定期乘車券) 운임(運賃)의 합산액(合算額).